

제280회 임시회  
교육위원회

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(김경자(양천) 의원 발의)

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의회 김 경 자(양천) 의원  
(더불어민주당, 교육위원회)

□ 존경하는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 
양천 제1선거구 김경자 의원입니다.

□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
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  
각하며,

□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 19조에서는 행정재산의  
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처분 중 양여와 교환의  
경우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
그러나 현행 조례는 교육감의 권한 위임에 있어 일반재  
산 뿐만이 아닌 행정재산까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  
되어 있어,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

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위임사무를  
명확히 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  
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거  
를 바라며,

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

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